

“인권이 . 없는 . 교육은 . 교육이 . 아니다!”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

일시 :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3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최순영,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후원 :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www.1318virus.net)

문의 : youth.kdlp.org , 02)2207-0695

학생의 행복과 청소년의 꿈을 위한 토론회

“인권이 . 없는 . 교육은 . 교육이 . 아니다!”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

일시 :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3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취순영,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후원 :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www.1318virus.net)
문의 : youth.kdnp.org , 02)2207-0695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

“학생에게 참여와 자치를!”
 “비인권적 체벌은 이제 그만”
 “두발자유 이제는 할 수 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교칙”
 “0교사강제적 야자는 가라”
 “기분 나쁜 소지품 검사 안돼”

[1부]

학생인권법 너무나 필요한 이유

- 학생인권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영상 시청
-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친구들의 생생 발언 등 (학생회법제화, 두발규제, 체벌 등)
- 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연미립)
-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민주노동당의 학생인권법안은?

- 초·중등교육법 개정,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법안에 대한 설명

[2부]

터놓고 이야기 하자, 우리들의 이야기!

- 법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발언
- 학교에서 체험하고 느낀 학생들의 발언

(준) 우리의 손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을!

- 토론회 참가자 전원의 투표로 학생들의 의견으로 만드는 민주노동당 학생회 법제화 법안 확정

[1부] 청소년이 말하는 현실 1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이 아 라

시대가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의식적 성장은 더욱 더 앞당겨지고 자치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이치를 판가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이걸 옳고 그르다는 걸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대의원회의를 통해 자치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꼼꼼히 준비하여 자신의 생각을 꼭 부러지게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초등학교 친구들이 더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육방송에선 어린이 국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그 시기는 점점 앞당겨 지고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인 지금, 자치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현 할 수 있는 학생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자치활동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바로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인 목적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자치기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기구, 대표기구라 불러야 할 학생회가 어느새 학우들에게 노동조직 혹은 학교청소조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해야 할 학생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의원들의 도시락 나르기, 수능 기원 떡값 걷기, 축제 후 학교 청소 등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명칭으로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교에 의해 마치 도시락을 나르고 돈을 걷는 것이 학생회의 의무처럼 당연하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회가 이런 일들을 의무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학생회에게 학생회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칙,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학생회의 목적을 자율적 자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극히 필요한 권한인 예결산권이나 대의원회의 개최권, 학생회 사업결정권 등 이러한 권한 모두는 학생회가 아닌 교사들로 이루어진 지도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 그리고 학생회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 자치활동의 중요한 권한들 모두가 학생회가 아닌 학생회 지도위원회 즉 학교 당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칙에는 학교 행정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어, 학생이 학교 운영에 대해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일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칙의 재개정권도 역시 지도위원회에게 있어 학생의 뜻에 따른 회칙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위원회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회의 권한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학생회의 권한은 학생회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봤자 들어 주겠어' 라는 학우들의 편견에 의해 학생회는 학생들에게조차 외면 받아왔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주적인 학교를 실현해 보자고 꿈꾸며 학생회에 들어 온 친구들도 번번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쳐 좌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명목뿐인 자치활동,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무시 되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교육 3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의 의사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상황과 함께 조율해 가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회의 역할이고, 지금까지 이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회라는 이름에 맞는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생회 법제화입니다. 학생회 법제화가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회가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의 제반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 될 수 있는 통로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회 법제화는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생회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회칙 재개정권, 예결산권, 학생회 임명권 등 중요한 권한들이 학생회가 아닌 학교 당국에 임명되어 있었기에 이 권한을 학생회가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변인입니다. 회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학생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우들을 대변해야 할 우리의 학생회를 우리 스스로 선출하고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 것은 자치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당연한 권리는 당연히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허울뿐인 학생회, 허울을 벗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되는 학생회 법제화가 실현되어 학생들이 앞장서서 학생 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벌’, 가르침을 빙자한 폭력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청소년 더하기

최미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학생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체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어릴 적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무서운 선생님의 대한 기억이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남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물론 기억에 많이 남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생님으로부터 맞은 매로 인한 상처는 잊혀지가 힘들기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 좀처럼 마음대로 나와 주지 않는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한 좌절감이 커, 한참 방황을 했던 저는 1학기 때 기술 주관식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10대의 매를 맞아 엉덩이에 피멍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을 적마다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까지 때리셔야 했을 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미움만 커 갔습니다. 피멍자국은 없어졌지만 그 때에 느낀 좌절감과 비참한 기분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1학년이 끝나가는 내내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찾지 못한 채 흔히 입시경쟁이라는 이 교육 속에서 버텨낼 희망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듯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번 몽둥이를 들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선생님들을 볼 적마다 처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체벌이란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며 “아, 맞나보다.”라 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그에 적응되고 길들여져 갔습니다. 5년 전, 교실에서 당구채로 한 친구의 온 몸을 무자비하게 내리치시는 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제게 있어 체벌이란 단순히 손바닥을 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잘못된 바를 깨우치게 하되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려는 체벌의 목적대로 매를 드시는 교사분이 계신다면 반면 때때로 감정적으로 흐려진 잘못된 판단에 의해 부정한 행동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는 데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도 예민함을 한참 극도로 느끼는 사춘기 시절인 저희들에게는 그로부터 대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더 해감으로써 매를 맞고 눈물만 흘릴 줄 알았던 저희는 어느 날부터 의식을 깨닫고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데에 항상 감사해야 할 스승의 은혜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가 점차 무의미해져 가기 시작했고, 체벌에 대한 반항심으로 학생들은 그 갑갑한 틀 안에서 벗어나려 일탈을 일삼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심화되어 한국 학교에 일반적인 정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본 목적과는 다르게 체벌이라 함은 선생님들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상징화되어 버리되 학생들에게는 폭력이란 의미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데, 이는 그 이상을 넘어서 점점 저희에게 있어 인권 침해란 생각까지 조심스레 들게 합니다. 이렇게 지나친

체벌은 저희로부터 자신감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무기력을 안겨줄 뿐 더는 그 이상의 본 의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체벌’ 엄연한 가르침을 방치한 폭력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심어주며 꿈의 뿌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한국 교육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1부] 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학생자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연미림

1. 학생회란?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자치조직이다.

첫 번째,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이다.

사회가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학생회를 학생들의 손으로 뽑지 않았었다. 학생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표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개념조차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민주화되고 진정한 학생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생겨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바꾸려고 했던 것이 직선제였다. 임명제나 간선제로 선출되는 대표는 학생들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교사학부모라고 할 때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학생대표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학생회 활동이 막히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의 한 주체로서 본다면 이와 같은 학생회 활동은 더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간부들도 스스로 대표기구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가로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대표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생회는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없다. 어떤 학생회 간부들은 개별 학교가 필요에 의해 학생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회 활동은 교육정책에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활동이다. 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은 크게 교과, 생활지도, 특별활동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특별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자치활동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기본적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법의 현재 수준은 학생회 활동을 두도록 명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회 활동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학생회는 학생자치조직이다.

교육정책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모든 학생회의 회칙을 보면 목적에는 '자치활동을 통하여 또는 '자치능력의 배양으로'와 같은 표현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학생회 간부들의 경험 속에서도 학생회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의 자치활동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생회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회는 심중팔구 학우들에게 외면 받거나 원망을 듣게 된다. 진정한 자치조직으로써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펴 나갈 때만이 학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현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전면 보장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 또한 해결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자치조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의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의에 연상되는 것은 분명 학생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들로 구성된 학생회 운영위원회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학생회의 일부분이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도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 대표들이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은 대의원이라 불리며,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그러니 학생회 활동이라 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활동을 함께 이야기해야 함이 옳다. 운영위원회든 대의원회든 어떤 한 부분만 잘 된다고 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학생회의 역할

①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학우들의 손에 의해 선출되고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학생회들이 학교행사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더 힘쓸 부분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일반학우들이 지지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회가 학교 연간 행사만을 진행하거나 매달리게 될 때는 그런 바람들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비록 우리의 활동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도 학생회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실현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우들의 신뢰가 더 쌓이게 됨은 당연하다. 물론 학생회가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수렴한 의견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한다. 듣기만 하고 바뀌는 것이 없다면 불신만이 쌓여가게 되기 때문이다. 학우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실현, 이를 알리는 활동을 잘 해야 한다.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는 의견 수렴과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많은 학생회가 건의함을 설치하고, 인터넷 카페 운영을 하기도 한다. 몇몇 학교는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학우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급식이나 용의복장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그런데 각 학교 현실

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학우들은 의견을 적극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우들의 의견수렴 통로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학생회에서는 창조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이끌어낸다. 풍문여고에서 했던 '화진이'가 그 대표적 예이다.

(화진이 : '화장실 진술한 이야기'의 준말로써, 보통 화장실 낙서를 많이 하는데, 풍문여고는 이런 지저분한 것을 해결하고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낙서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학교 화장실 각 칸마다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을 붙여놓았다. 실제로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학생회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②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많이 제한되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한 당한다. 교칙이 대표적인데, 시대가 바뀔에도 이전 시대의 교칙들이 계속 바뀌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권리의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제한당하는 학생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의견수렴과 실현을 통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제한당하고 있는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두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용의복장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개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리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③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생활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생활이 존재한다. 학우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학생회의 역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잘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생일에 e-mail을 보내주는 학생회도 있다. 화장실에 휴지를 놓는 것이나 매점 메뉴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학생회도 있다. 언제나 민감하게 학우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④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이해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학생회가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또,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 서로에 대한 배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 등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으나 뭐든 스스로 만들어갈 때 영향이 큰 것이다. 학생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어떤 교육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걸 이끌어 내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다.

캠페인이나 선거는 모든 학생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게 된다. 또, 학생들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⑤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칫 사회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게 될 수가 있다. 하나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마치 대학에 가서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학생들도 어른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회참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회다.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농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나 우리의 농촌을 알게 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사회참여활동은 비단 특정한 문제에 대한 참여의 의미뿐 아니라 역사, 시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 잘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교에서는 419, 518과 같은 역사기념 행사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정의를 위해 나섰던 사례로는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이나 사립학교 비리착결 운동 등이 있었다. 또, 2002년 있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때 학생회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들을 적극 홍보하고 함께 참여했던 경우도 있다.

3. 학생회 활동의 현실

“선생님이 하지 말래요”

현재 학급회의, 대의원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나 건의사항들이 실제 학교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심지어 학급회의 주제, 대의원회의 주제도 정해져서 내려와 회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또한, 축제, 학생의 날 행사 등 행사기획안을 학생회가 작성하여 담당교사에게 갔을 때 'OK' 사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학생회 간부들의 구상은 교사 선에서 멈추고 통제당하여 자유롭게 학생회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 두발 규정, 용의복장 규정 문제점, 학칙 개정, 급식

문제 등을 학생회에 건의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눈치 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 했을 때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것 바뀌주세요” 라고 말하는 학생회 간부들은 이상하고 불순한 학생으로 낙인찍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징계 운운하며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왜 학교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나”고 훈계하는 것이 일반적 학교의 모습이다.

학생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되고 보장되지 않는 이런 학교 풍토 속에서 학생회 활동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학생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 선생님에게 검토 받아야하고 선생님이 “NO” 했을 경우엔 학생회간부들의 포부도 계획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생님들의 허락 없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 정말 큰맘 먹고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학생회는 늘 학교 측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 측의 태도이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학생회 활동 활성화하라고 공문을 내려도 이런 학교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 학생회 활동 제도적 보장 미비 (학생회칙의 문제점)
- 학교 측의 학생회 활동 통제 및 제지
- 학생 교사간 학생자치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 학교 측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비협조적 풍토

“지원금이 너무 없어요.”

예산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이다. 학생회 활동을 못하거나 학생회 간부들이 사비를 털어서 활동을 하거나... 학생회 활동 예산을 넉넉히 책정하는 학교는 거의 드물다. 학생회 간부들도 언제 어떻게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벽이다.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인 교사가 있는 경우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여 일정정도는 따내겠지만 일반적인 학생회 간부들은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을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학생회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어떤 학교는 일반학생들에게 모금통을 돌려 학생회비를 마련하려 했던 사례도 있다. 학생회에겐 예산권이 없고 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활동에 대해선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학생회 예산권 미비
-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 미흡

“시험, 공부 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학생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일 것이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등 시험 전후로 시험의 압박으로 학생회 모임을 한다는 것, 학생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모든 학생회가 관행적으로 시험 준비기간에 들어하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시험 끝나고 다시 재개 하게 된다. 또한, 고3이 되면 입기가 6개월 동안 남아있지만 학생회 활동에 손을 떼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공부와 성적 때문에 학원도 가야하고 보충도 해야 하고 과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어 학생회 모임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닌 것이다.

-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천대 당함
- 학원, 야자, 보충 등 학생회 활동할 시간 부족

4. 학생회 활동의 문제점

(1)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4장(학교) 2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31조의 2(결격사유), 32조(기능), 33조(학교발전기금), 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32 조 기능을 보면 ①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함을 알 수 있다. 많은 부분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31조(설치)에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고만 나와 있어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 보내진 공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해석을 "학생대표도 참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고 참관시키는 것은 개별학교 교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관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교 운영을 의결 하는 학운위에 학생 대표(학생회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법문화 수정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와 활동을 어디에도 보장하지 않는 초·중등 교육법 조항들을 개정하고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2) 제도적으로 활동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제도적(법, 규정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 일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표1〉 제도적 문제의 분류

제도적 문제를 나눠보면	정책·이념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법	학운위 참여X
		관련법 보장X
		학생활동 억압 조문(징계 등)
	학생회칙	지도위원회
		예산권X
		자격제한
		회칙에서의 목적
		회칙에서의 금지활동
	보장 안 됨	교사 맘대로
학생회실시기 지원X		
예산권X		
표현자유X		
		결사행동 자유X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으며 학교장에게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권 위임되어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같은 교육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원할리는 만무하다.

(3) 의결권이 없다

학생회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 대의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보다 할 수 없다. 학생회칙에서 대의위원회의의 기능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이라고 나와 있지만 반쪽짜리 의결이다.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지도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의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이 지도위원회를 거쳐 풀리는 등의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학생회 활동들이 학생회 지도교사

의 선에서 통제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지도위원회와 같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일이 아님에도 학교안에서 자연스럽게(교사의 성향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학생회 활동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4) 예산권이 없다

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회에는 예산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법에서는 자치활동에 관한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회칙에서는 학생회가 짚 예산안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된다고 나와 있다. 학교의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만을 학생회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함에도 학교에서는 예산권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산권이 없음으로 해서 학생회 활동의 기획부터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회칙에는 학생회 예산의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된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 등록금을 낼 때 학생회비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운영회비(또는 다른 명칭으로) 등으로 내고 있다. 학생회 예산으로 쓰여 져야 하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회 예산은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학생회 예산은 학생복지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학생복지비라는 개념이 자치활동 예산이 편성될만한 성격인지가 불분명하고 학생복지비 내의 학생회 예산은 전체 학생회 예산에서 학생회가 자유롭게(학생회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다.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편성된다. 예로 축제예산은 특별활동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한 학생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부서에 나누어 져서 편성되는 상황은 학생회가 예산권을 갖는 것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덧붙여 학교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다.

(5) 학생회 간부의 자격제한이 있다.

학생회 간부가 되는 것을 성적이나 징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성적제한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들이 있으며 징계로 인한 제한은 거의 모든 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학생회가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되어 없다.

(6) 학생회칙 상에서의 학생회의 목적은 맞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회칙의 목적에서는 "본회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거나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틀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대표로서 다양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국가의 자치활동개념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큰 개념이 바뀌는 것과 세부적 규정에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7) 학생회칙에서 금지활동이 불필요하게 존재 한다.

정당,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활동을 막거나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 조항은 평소에는 있으나 마한 내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학생회탄입의 발미가 될 수 있는, 학생통제를 위한 규정이다.

(8) 표현의 자유가 없다.

학생회가 자율적으로(검열을 받지 않고) 게시판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모든 게시물은 검열을 받고 학생 부장(혹은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의 도장을 받아야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학교 방송 역시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다. 학생회 활동이 학우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검열 없이도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게시판의 운영이나 방송의 사용 등은 규정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모호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의 학생 선동 등)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

(9) 결사, 행동의 자유가 없다

허락을 받지 않은 설문조사, 서명운동은 학생회가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교사, 지도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학생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이러한 활동들이 보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라도 학교에서 이런 일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회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부분이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교장은 징계 규정을 만들고 마음대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징계에 대한 제도도 민주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10) 학생회실, 기기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학생회가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여서 회의할 장소조차 없다면 학생회 활동이 잘 될 수가 없다. 학생회 활동은 애들 장난이 아니며 많은 업무가 있다. 이런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실, 활동기기는 기본 지원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적 보장은 없다.

5. 학생회 활동의 대안

지금까지 다양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열거했다.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 현행 제도에서 학생회 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으로 학생회 활동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제도를 바꿀 때에는 억압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거나 억압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 그리고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회 법제화'라는 구호로 이야기해왔다. 학생회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일정정도 제도적인 측면은 보장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의 법안 내용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즉, 자치활동의 권장보호만을 명시하고 있는 법조문을 학생회실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학생회의 예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지도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법제화를 하는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등학교법이라는 상위법에 학생회의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학생회칙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을 훨씬 상위법인 초·중·고등학교법에 명시하기보다는 그에 걸맞게 제도화를 해야 한다. 또, 초·중·고등학교법 제17조(학생회 법제화를 이야기할 때 바꾸자고 하는 부분)만 바뀐다고 해서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하며 법을 바꾸는 것만이 아닌 학교현장의 세부적 제도들 또한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법 17조를 개정해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학생회 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의 내용으로도 억압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제정이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박탈하는 법개정을 하려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의 어느 부분에서도 스스로 바뀌는 일이란 없다.

또한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 이념과 철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이념 또한 쉽게 바뀔 수가 없다. 현재의 교육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책이란 외국 의 정책을 모방하고,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어본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01)

(1) 학생회칙의 개정

학생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학생회칙이다. 지도위원회나 금지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일단 바꾸는 것부터 학생회 활동의 보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칙의 개정이라는 것이 선거 시기나 부서를 바꾸는 것 등 쉬운 부분도 있지만 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 넘겨줄 수 없는 권한에 관한 부분(지도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학생회칙을 개정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상위법에서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2) 관련법의 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보장

학생회 활동을 학생회칙보다 상위법에서 보장한다면 학생회칙도 그에 맞게 개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관련법은 초·중·고·교육법, 시행령, 회계규칙 등이 있다. 하나 법이 제정·개정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책과 이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과 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장치로는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문 앞에 멈춰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 경 내

1. 인권의 보편성과 어린이·청소년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된다. 인권이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지만, 존엄함이 자기결정과 자유, 평등을 요구한다는 점은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다.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은 바로 ‘보편성’(universality)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보편성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에 대한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날 보편성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주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의 존재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나갈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는 온전한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인권의 보편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집단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인권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의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은 부모의 욕망을 대리 실현해줄 존재로, 국가와 자본의 필요에 따른 능력을 갖고 있고 효율적이고 순종적인 노동력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만 간주될 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어린이·청소년은 ‘자비로운 성인’에 의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곧 통제와 억압이 따라붙는다.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어린이·청소년의 소망과 존엄성에 대한 투쟁은 쉽게 묵살되고 일상화된 통제와 검열이 정당화된다. 여기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행사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어린이·청소년은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존재

로서 부모와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아닌 것이다.

2. 청소년 인권주체의 등장

1960년대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배적 관점은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시민권보다는 보호와 복지의 측면을 더욱 중요시했다.¹⁾ ‘이동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전개된 새로운 교육의 경향도 강압보다는 격려가, 인위적 교육보다는 자연적인 발달과 어린이·청소년의 이해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더 효과적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을 뿐, 그들의 인권이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어린이·청소년관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1960년대 후반 전세계를 강타했던 혁명의 물결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68혁명’은 전후 자본주의의 위선과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남성 백인 자본가 중심으로 짜여진 시민권 체계, 지배체제의 일부가 된 구조파들을 비롯하면서 반전평화, 여성해방, 흑인해방, 어린이·청소년해방(학생자치) 등의 요구들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던 과정이었다. 이 혁명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창설하고 동맹휴업과 거리 행진을 주도하면서 청소년 인권 보장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조직체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운동의 중심에 놓고 전개해나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었다.

당시 청소년들의 주장 가운데 학교와 관련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교육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가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진정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아닌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학생의 의사가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폐지되어야 하며 사적인 편지를 교사가 읽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처벌은 없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한다. 금지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실수할 권리가 있다.” 한 마디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진지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68혁명을 통해 제기되었던 새로운 인권에 대한 주장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 도전함으로써 중대한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공헌했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1) 최초의 국제적 아동인권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체네바선언,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의 전반적 기초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아동권’에 기초해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 대표적으로 미국 민권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 시위와 등교거부, 인종분리가 강요된 공간에서의 연좌시위,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캐서린 아이작,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아르케, 2002를 참고하면 된다.

19-10-11
2016.10.11
16:46:29

데 있어 강조점이 '보호'에서 '자율성'으로, '보살핌'에서 '자기결정'으로, '복지'에서 '정의'로 전환되었다.³⁾ 또한 68혁명을 전후하여 각국의 법률이나 판결에서도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소송법이나 친권법 등에서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규정하기 시작했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⁴⁾ 국친(國親)사상에 기반하여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국가형벌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절차적 엄격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이 인하되기 시작한 것도 청소년 주체의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은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자의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들도 잇따랐고, 탈학교운동이나 대안교육운동, 교육과정의 사회화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추구하는 흐름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엔 내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1989년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사회 각 부문에서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청소년 인권모임들이 붓물이 터진 듯 생생되고 있으며, 각계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나 대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는 집회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존재를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인권주체의 등장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결과 '무지와 무권력의 악순환 구조' 속에 갇혀 있었던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나섰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은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선 교육, 후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좁은 인식도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요구의 핵심에 '학교의 변화', '학생인권 보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학교는 대다수 청소년의 삶과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3. 청소년 인권의 내용

1989년 11월 20일에 역사적으로 탄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성문화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현재, 유엔이 채택한 여러 인권조약 가운데 191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인과 다름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 어린이기와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이므로, 어린이·청소년

3) Freeman, Michael D. A. "Introduction: Rights, Ideology and Children", in Freeman, Michael D. A. et al.(eds.)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3.

4) 스웨덴은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년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위치시키면서 과거 어린이·청소년에게 분명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마땅히 향유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는 한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난민아동, 장애아동, 형사절차과정에 있는 청소년 등 어린이·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어린이·청소년 권리운동의 중요한 유산들이 이 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엔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이행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분류기준	구체적 권리 조항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유지할 권리/ 표현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 명예, 신망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아동의 존엄성에 합치되는 학칙 운영/ 인격과 능력의 최대한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등 유엔의 원칙에 부합하는 교육목표의 설정/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과 지원
양육과 보호에 대한 권리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금지/ 가정환경을 상실했을 경우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입양 시의 권리/ 양육 및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 심사/ 난민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보호, 가족재결합에 대한 권리
특별상황 하에서의 보호조치	법적 분쟁 상황 하의 권리(사형 및 종신형 금지, 고문금지, 성인과의 분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회복귀 지원 등)/ 착취 상황 하의 권리(성적 착취와 학대, 경제적 착취, 약취 유인 및 매매 등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무력분쟁 하의 권리(적대행위 참여 금지, 15세 미만의 강제징집 금지)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정부의 조약 홍보·교육 의무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협약의 이행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1996년과 2003년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최종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서 지적된 학생 인권 관련 사안으로는 △교사, 법집행 공무원 등 어린이·청소년 가까이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협약 내용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한국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어린이·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점 △학교 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교육이 무상이고 취학전 교육과 중·고등교육의 무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5) 2004년부터 중학교 교육의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무상화라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기타
자
본
문
서
의
주
제
는
아
동
권
리
협
약
의
이
행
정
황
에
관
한
것
이
다.
이
문
서
는
아
동
권
리
협
약
의
이
행
정
황
에
관
한
것
이
다.

점 등이 있다.

4. 인권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학교

(1) 학교규율과 인권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아동은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인간'이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적 굴레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식의 입시문화, 그리고 '순종 천국, 반항 지옥'의 권위주의적 통제질서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아동을 '교육'한다는 명분 하에 강제적인 보충야간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다움'을 규정한 교칙과 각종 생활규정, 교사 재량행위 등을 통해 일상적 검열과 통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가 교문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이다.⁶⁾

학교에서 강제되는 규율은 해서는 안되는 것(결석, 지각, 태만, 무례한 태도,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하면 좋은 것(시간 엄수, 규칙적인 생활, 성실,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 단정한 자세)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이를 상벌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아이들의 행동을 규격화표준화확일화시킨다. 학교의 경직된 규율과 질서로부터의 이탈은 곧바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일상적 통제를 통해 순종적인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학교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지 않는 순종적이고 동질화된 국민과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필요로 하는 순종적인 노동력을 길러내는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⁷⁾

오랫동안의 법적·교육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여전히 일시적 통제효과를 달성하고 학교규율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공부에 전념하라는 자극을 준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공개, 성적에 따른 입원 후보 자격 제한, 교문 앞 등교지도, 불시의 소지품검사, 속옷검사, 무발검사 등 일상화된 검열과 통제를 통해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의 권리, '몸'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소지품검사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러한 검열과 통제의 과정은 흔히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과 결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규율이나 부당한 규율의 집행에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2004년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인천위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와 학생 인권, 나아가 교사들의 자주적 교육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7) 교칙의 학생 통제적 성격에 관한 분석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10을 참고하면 된다.

(2) 징계절차와 인권

단순한 체벌이나 벌점, 교내봉사활동에서부터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내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변론권이나 징계 사유의 사전 통지 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 대책도 감시와 처벌 위주의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징계' 또는 '형벌'의 자의적 집행과 처벌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한 아동', 즉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거나 불량하거나 반항적인 아동, 즉 이른바 '지위비행자'(status offenders)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학교의 징계권과 더불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이 제도화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특히 아동수용시설은 아동복지를 위한 보호적 기능과 아동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벌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감금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형법에 의하지 않은 감금의 원리'가 현실적으로는 폐지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실이 바로 아동수용시설이다. 이러한 아동수용시설은 가부장적 국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형법을 위반하지 않은 지위비행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교육적 비형식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인에게는 인정되는 헌법상의 절차적 권리, 즉 변호인 선임권과 묵비권의 인정과 그것의 사전 고지, 대심(對審), 재판의 공개 원칙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징계나 사법처리의 과정에서 부모의 재력이나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아동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3) 학교운영 참여와 인권

위와 같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규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아직도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 학생들의 의견이 위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막혀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열린 의사결정구조를 실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나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교내 언론활동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校誌)나 학교신문의 내용, 심지어 학교통신방에 올라오는 글까지도 학교의 검열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매체를 통해 알리게 될 경우 불만이 확산되거나 학교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도 제대로 보장될 리 없다. 사회재단 비리문제를 둘러싼 학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징계처분을 면키 어려우며, 대다수의 학교가 학교장의 허락없이 학교밖 집회나 행사에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칙을 갖고 있기도 하다.

(4) 종교사상의 자유

학생들은 학교추첨제도에 따라 배당받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원치 않는 종교교육까지도 강요받고 있다. 나아가 특정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받기도 하며, 이를 거부한 학생들은 아예 입학 자체가 거부되거나 재적 처리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2003년 말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학생이 건전하지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그 학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 숭배라며 거부하였다)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⁸⁾와 2004년 6월 기독교재단 대광고등학교에서 종교예배 강요를 거부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퇴학처분을 당한 강의석 씨 사례를 들 수 있다.

(5) 반인권적 사회질서와 학교규범의 이중주

나아가 학교는 다른 사회적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반인권적 사회질서와 규범, 문화가 스며들고 옹호되는 주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정한 방향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특정한 성역할을 내면화하기도 하며, 폭력적 경험을 학습하기도 한다.

① 교실 안 소수자들

지금까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학생이라는 신분적 구속과 연령의 계서제에 따라 학생 일반이 학교권력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보편성과 함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인종민족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등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갖고 한 교실에 나란히 앉아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학교의 크고 작은 정책이나 교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특정 정체성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차별적 시선은 이들에게 '배제와 차별'이라는 폭력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차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현실이 다양한 차이를 고려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에는 무리이다. 교사에 의한 성차별 문제도 물론이고, 교실 안 소수자들을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 차별문제도 심각하다. 비장애인의 몸만을 배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운동회나 수련회 같은 학교행사는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대표적 사례일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폭력이 된다. 성, 장애, 피부색 등의 정체성은 그나마 눈에 보이더라도, 성적지향, 가족형태,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정체

8)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종교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승인 하였으며, 이 판례는 1990년대 중반 보스턴 라틴스쿨의 한 12살짜리 학생이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충성 서약을 거부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권리를 옹호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성은 아예 고려 대상에서부터 제외된다. 당시자가 '커밍아웃'하지 않는 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정체성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없는 존재"로 치부된 학생들은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받게 될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움츠러든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⁹⁾, 아웃팅에 대한 위협으로 학교를 떠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성,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성적체성, 사회적 신분, 병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비 차별의 원칙은 인권 보장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나아가 모든 사람은 다르게 살 권리가 있다. 이는 명백하고 가시적인 형태의 차별을 넘어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학교가 당연하다고 전제하는 '주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 교사와 다른 종교나 신념, 성적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학생 인권은 학생신분만을 고려하여서는 온전히 꽃피기 힘들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차이를 인정할 때, 학생 인권의 나머지 부분도 온전히 꽃피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생간 폭력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환상은 최근 집단따돌림 피해를 비롯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급증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심정적 일체감을 형성한 또래집단이 한 개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학적 쾌감을 얻는 집단따돌림, 뺨뺨기에서부터 협박, 집단구타 등에 이르는 학생폭력의 문제는 학교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인공포증, 학교거부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학교내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왕따와 같은 폭력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문제는 학생들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생폭력은 가해학생의 가정이 당연하고 있는 빈곤과 실업, 해체 위기의 가정 문제, 가정폭력이나 교사체벌로부터 연유한 적대감과 공격성의 증가, 학교현장을 비롯한 사회구조가 제시하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모델,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문화 등이 함께 결합하여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눈에 안 보이는" 폭력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9) 2003년 4월 자살한 동성애자 윤모 씨의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커밍아웃을 한 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5.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의견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개정안의 몇몇 내용이 사회적 논란을 접화하면서 후퇴될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후퇴될 가능성이 높은 몇몇 내용에 대해 인권적 관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체벌, 법으로 금지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체벌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이른바 '비교육적' 체벌, '폭력적'인 체벌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교육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체벌 금지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폭력적) 체벌을 구분하고자 하면 할수록 체벌의 본질은 흐려질 뿐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교사가 있어도 학생이 교사를 때려서 바로잡겠다고 나서지는 못한다. 맞은 학생들 가운데 몇몇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교사에게 주먹질을 하는 사례가 간혹 있지만, 그것은 화가 난 사람의 즉각적 반응인 것이지 가르침을 위한 체벌은 아니다. 오직 '사랑의 때'라고 치장되는 체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은 강자인 교사에게 있다. 폭력이란 권세든 지위든 돈이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자에게 가하는 일방적인 파괴의 힘을 말한다. 그래서 체벌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어쩌면 심하게 때리는 교사는 소수이므로 체벌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소수라도 그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상처입는 아이는 해를 바꿔가며 계속 불어나고, 더 큰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¹⁰⁾ 설령 체벌을 하지 않는 교사가 더 많다 해도 그들에게는 때리는 교사를 제지할 힘이 없다. 왜 남 교육하는 데 간섭이라는 편견만 얻어먹기 십상이다. 심각한 체벌을 당해 법률에 호소해도 교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수가 다반사고, 비록 법적 구제를 받더라도 그 아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기 어렵다.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다. 개개인의 품성에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맡겨두는 법은 없다.

주먹다툼을 벌인 아이들을 잡아놓고 "때리는 건 나쁜 거잖아"라며 때리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런 교육은 아이들에게 '맞을 짓을 하면 때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 맞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체벌이 끼치는 가장 나쁜 영향은 '폭력' 이외의 다른 관계맺기와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앗아가버리는 것, 폭력에 저항하는 힘과 삶의 능동성을 빼앗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육여건이 교사들을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게 만드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체벌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10) 매해 참교육학부모회가 발표하고 있는 체벌 관련 상담사례를 보면 '교육적'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원시적 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조건만 바꾼다고 해서 체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체벌은 구조의 결과만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이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 개개인의 선택에 학생의 존엄성을 내맡겨둘 수만은 없으며,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과 지도의 방식을 찾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체벌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할 때,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적 대안을 찾는 노력도 본격화될 수 있다.

(2) 두발규제의 폭력성,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해결되나?

2000년에 이어 2005년 또다시 두발규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두발규정을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주된 해결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발규제가 정말 필요한 일인지에 관한 교육당국의 입증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파문하고 있으며, 두발'자율'과 두발'자유'의 근본적 차이에 주목하는 시선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두발규제를 정당화하는 이들은 '학생다움'(여학생의 경우 '여자다움'이라는 기준이 추가된다)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 학습분위기 조성 및 비행 예방의 필요성 등을 앞세운다. 하지만 학교마다 두발규정이 다른 현실은 '학생다움'의 기준이 그만큼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두발규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당국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규제를 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Massie v. Henry 사건'(1972)에서도 재판부는 "두발의 길이가 건강이나 타학생에 대한 안전이나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발의 길이에 대한 학교의 규칙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해 입증책임이 학교측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설령 두발규제가 필수적임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두발규정의 집행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과 과도하지 않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자아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바리깡의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있다. 두발규제는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칙을 만들고 언제든지 학생들의 몸을 침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시킨다. 그럼으로써 자율보다는 타율에 길들여지고 외부 강제에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기꺼이 순응하는, 통제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길러낸다. 이런 식으로 몸에 대한 통제는 정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두발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두발 자율'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내몰린 학생들에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참여 속에서 채택된 규정인 만큼 그 규정이 가진 설득력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안 권력관계를 감안할 때 이 안은 또다시 학교장의 독재를 허용할 가능성을, 학생들의 의사는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다만 참고사항에 그칠 뿐일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또 두발규정이 있는 한, 단속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두발규제를 다수결에 부쳐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인권은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는 이유로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3) 학생을 학교운영에 관여할 능력이 부족하다?

95년 강원도 초등학교 1학년 최우주 학생이 제기하려 했던 헌법소원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학생인권운동의 불을 지피는 직접적 계기가 된 바 있다. "저는 단지 상식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합리적인 학교운영이 더 이상 학교운영권자의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독단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우주 학생이 작성했던 헌법소원서는 궁극적으로 학교의 민주화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요구한 것이었다.

부끄럽게도 10년 전 최우주 학생이 비판했던 학교의 현실은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다.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 일방적 지시와 명령만이 가득할 뿐, 대화도 소통도 없다.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수직적인 지시 전달 구조만이 활발하게 작동할 뿐, 아래로부터의 의견 개진을 가로막는 구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비민주화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학교와 교장 1인의 의사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학교의 비민주성은 곱이 된다. 아무리 제 기능을 못하는 교장의 들러리기구나 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법적 자격도 학생들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학생회가 단지 학교의 결정을 전달하는 시녀기구로 전락해 있는 학교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른바 '어용 학생회'가 학생들의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학교도 적지 않다. "학생이 감히 어딜 학교운영에 참견하려 드느냐"는 식의 태도는 교장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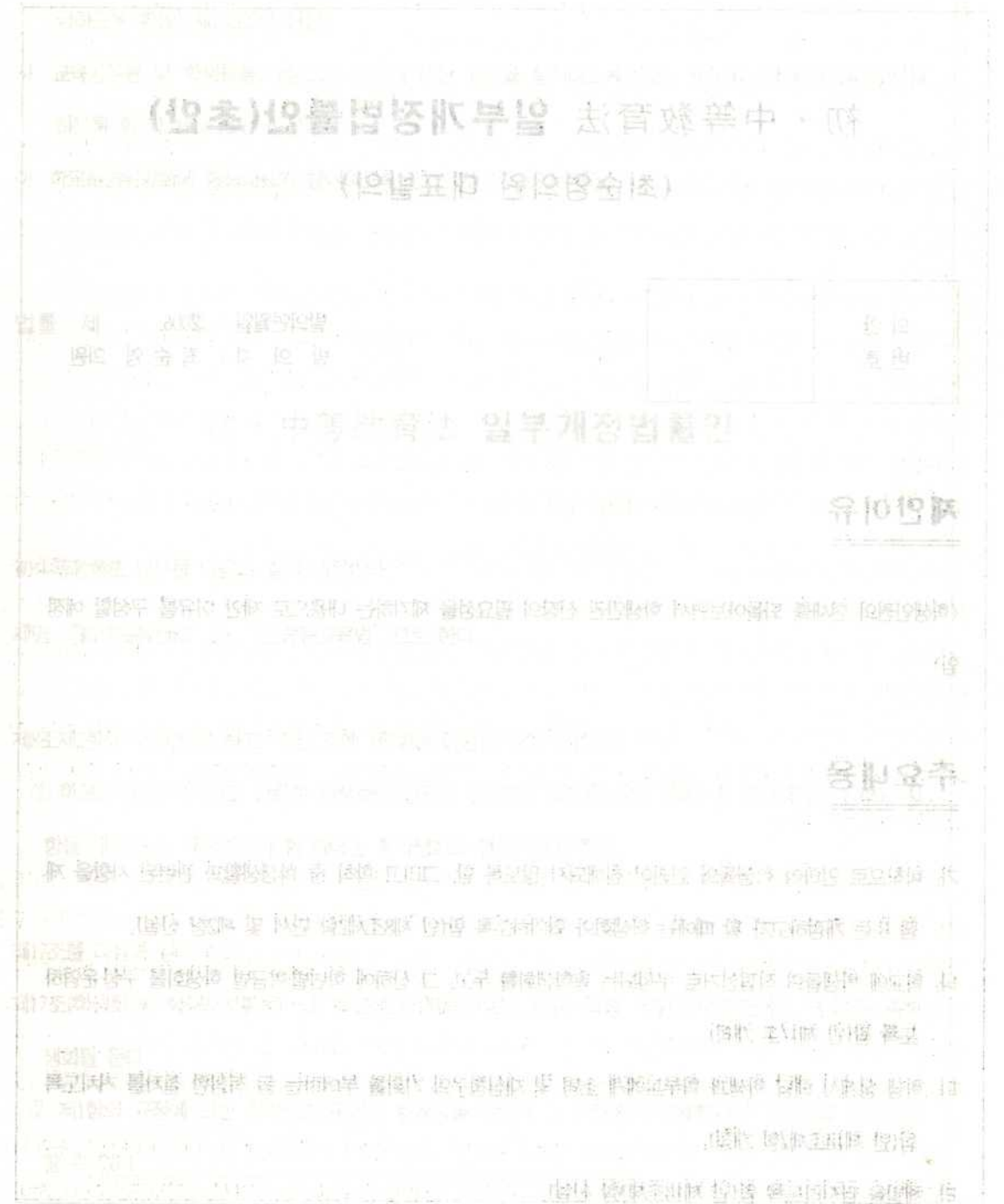
이렇듯 학교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여까지 배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학생들은 알아서 입조심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참여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교장 한 마디로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청 행사나 학교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활동이 강제로 정해져도 학교는 조용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행사 내용이나 일정이 통보돼도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학급회의 시간이 시간표에만 있는 유명 시간이 된 지 오래이지만, 아무도 학급회의 한번 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뭔가 불만이 있더라도 '뒷담화'를 까는 정도에 그칠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그렇게 학생들은 '침묵의 문화', '체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경험은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자연히 자치 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또다시 "애들한테는 자율을 쥐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학생들도 참여해봤자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참여에 무관심하다. 학생회는 몇몇 튀는 아이들이나 학생회 활동을 경력 삼아 대학 가려는 아이들이나 관심을 갖는 그런 곳으로 바라본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자치활동이 꽃필 까닭이 없다. 학생자치활동은 그 자체로서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을 행사하는 장일 뿐 아니라, 학교의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와 권리행사능력을 체험하고 성숙시켜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로부터의 통제질서, 아래로부터의 침묵과 체념의 문화는 결국 학교의 비민주성과 학생 인권 탄압의 메커니즘을 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부의 형식적인 지시가 먹혀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의 인권과 학교운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나아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한낱 공문구로서 체계적으로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참여의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은 결코 해방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없다. 대상화와 배제는 지배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대리 결정'을 넘어 '참여'를 통해서만 학생들의 성숙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숙 이후에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성숙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초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6.
발의자 : 최순영 의원

제안이유

〈학생인권의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학생인권 신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제안 이유를 구성할 예정임〉

주요내용

-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법률 제 호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初·中等教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初·中等教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차·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73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③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학생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학생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사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初中等教育法</p> <p>第8條(學校規則) ①(생략)</p> <p>〈신설〉</p> <p>②(생략)</p> <p>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奨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p>	<p>초·중등교육법</p> <p>제8조(학교규칙) ①(현행과 같음)</p> <p>②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④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p> <p>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 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재개정 발의</p> <p>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p>

<p>第18條(學生의 懲戒) ①(생략)</p> <p>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p> <p>③〈신설〉</p> <p>〈신설〉</p>	<p>第18條(學生의 懲戒) ①(현행과 같음)</p> <p>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의2(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p>
---	--

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 ⑤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⑥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 제18조의2(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

(신 설)

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학생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지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적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012229.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 (생략)

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 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 人士로 구성한다.

사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1.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1.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2.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2.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3.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3.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4.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4.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5.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5.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6.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6.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7.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7.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8.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8.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9.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9.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10.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10. 1978년 12월호 청소년* 남한당* 1978년

13

14

두발제한 -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목진성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슬픈 날들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향한 이상이 우리들 가슴속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때때로 납득하기 힘든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중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한해온 두발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교문을 들어설 때면 주관적이고 강압적인 두발단속에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선도부원이나 학생부장 선생님의 단속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벌을 받아야 했고 해명이라도 하려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반항이나면서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해명조차 못하고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한바퀴를 완주하고 나면 다리에 심하게 알이 배겨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체육수업을 할 때까지 지장을 주었지만 우리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고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단속당해도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넘어가는 생활이 점점 일상화 되어갔습니다.

기준두발보다 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준보다 짧아도 혐오감 조성이라는 명목아래 학생부실로 끌려가서 매를 맞기 일쑤였고 한술더떠 수업용 가위로 머리가 몽텅 잘리거나 수업도중에 불러나가 이발소에 가서 강제이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머리와 함께 가슴속에 남아있던 자존심과 학창시절의 추억들도 잘려나갔고, 저희들은 언제나 획일화된 틀 속에 갇혀진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나날 중 교육청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두발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개정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들이 그때만큼 학교에 기대를 걸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방과 후 재개정 회의가 열렸으나 참가자는 학생회장과 각 부장, 그리고 선도부원들 뿐이었고,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인 학급회장단은 참가조차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부장 선생님이 회의시작 전 원래 교칙은 훨씬 엄격한데 이정도면 거의 자율화나 마찬가지니까 자율화 하자는 의견은 상정조차 하자말라고 엄포하신 바람에 회의 중에는 지극히 형식적인 발언만이 나왔고, 학부모의 의견도 열명도 안 되는 학부모회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랐던 저희들의 바람과 달리 회의가 끝난 후 두발규정 개정에 대한 발표는커녕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두발단속의 이유를 여쭙보면 '가치관이 불안정한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을 막기 위해서' 혹은 '머리에 신경을 쓰면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어서' 라고 대답하십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성인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 학생과 성인의 구분이 힘들어져 정작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한때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더러 계십니

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시행되는 두발규정의 모순을 너무도 많이 봐왔기에, 종종 선생님들의 말씀이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선도되어야 할 소위 일진등은 두발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선도부들이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못내고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조차 일이 더 복잡해지므로 꺼려하시는 실정입니다. 정작 두발규정에 희생되어 교무실에 불려가 매 맞고 머리가 잘려나가는 학생들은 모두 힘없고 나약한 학생들로 채워지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굴레 속에 적응시켜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두발규정을 전면 폐지하여 머리를 땅고 휘황찬란한 빛깔로 물들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인권을, 갑작스레 교무실에 불려가 매를 맞고 가위로 머리가 잘리지 않을 자유를, 그리고 아침에 가슴을 졸이며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될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억속의 학교가 강제와 억압이 난무하는 학교가 아닌 존중과 자유가 숨쉬는 그리운 선생님들이 계시던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